

Buckeye Recyclers, CHEP과 대결시작!!

세계 최대의 파렛트풀 회사인 CHEP 미국 현지법인 CHEP U.S.A.와 미국 파렛트 생산 및 재사용 업계와의 마찰이 법정
으로 비화된 내용 <영림목재(주)제공>

영림목재(주)
상무이사 임호식

2001년 9월 18일, 미국 오하이오 주(州) 찰스톤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Buckeye Recycler는 Chep USA를 오하이오 주(州) 민사법원에 고소하였다.

이번 소송은 자사 마감 일에 임박하여 일어난 일이고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여러 가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Buckeye Recycler가 유일한 원고(原告)라 하더라도 이번 소송은 여러 면에서 파렛트 산업계에 있는 모든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간의 파렛트 산업계와 Chep의 파렛트 렌탈 풀(pool) 사이에 증가하고 있던 불만들을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서는 먼저 그 동안의 배경을 살펴보고 나서 그 후에 이번 일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Chep과 파렛트 재활용 산업의 배경

북미 파렛트 재활용 산업과 Chep USA는, 10년전 Chep이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했을 때부터 대단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 Chep이 처음 미국에 들어왔을 때의 북미는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모든 면에서 파렛트 재활용 산업이 발달되어 있었다. 파렛트 재활용 산업은 독립적인 기질의 사업자들로 되어있어서 모든 일을 미국 방식으로 처리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전형적인 유럽의 사고 방식과는 몇가지 점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었다.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미(美) 파렛트 재활용 산업은 이미 자기만의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었기에, Chep은 다른 나라 시장에서는 정착된 재활용 산업의 기업자들과 거래하는데 서툴렀다. 그래서 초기에 Chep은 사업자들에게 Chep 로고가 찍힌 블루 파렛트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리는 공식 서류를 보냈는데, 이로써 Chep은 자신이 다른 파렛트 재활용 사업자들과는 대립된 입장임을 즉각 깨달을 수 있었다. 파렛트 재활용 사업자들은 Chep이 공식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선수했다고 생각했고, Chep은 그 편지로서 몰랐던 이들에게 소유권 사실을 밝혔다고 믿었다.

Chep은 파렛트 생산업자들이 있는 시장에서 성장한 후 미국으로 진출했는데 이전의 시장에서는 재활용 산업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Chep이 수년 전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Chep과 EuroPallet의 파렛트가 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으며 48×40 풀(pool)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진출 이후 Chep은 미국 시장을 연구했고, 당시의 ‘파렛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식료품 업계의 몇몇 선두 기업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Chep은 미국 파렛트 풀에 진출해서 4억 렌탈 파렛트를 점유할 때까지 계속 풀을 성장시켰다. 비록 여전히 유럽의 풀 규모가 더 크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Chep의 슬로건이 되어왔다.

당시 Chep은 자사 파렛트를 생산하고 ‘분류(sortation)/저장’과 ‘수리(repair)’ 분야를 포함한 저장소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산업 구조 내에서 활동해왔다. 이제껏 탄탄 대로를 걸어왔다. Chep은 공식적으로 파렛트 사업자들과 그들의 서비스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밝히고 있다. 월마트 점포들을 위해 직접 선정한 제한된 수의 파렛트 생산자들과 파렛트 경영 공급자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 꽤 많은 파렛트 재활용 기업에서 저장소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중 많은 기업이 계속 바뀌고 있다. Chep은 이전의 저장소들을 점차 철거해 나가면서 최고의 저장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듯 하다. 인정하긴 싫겠지만, Chep은 수년간 강력한 이양(移讓) 공급업자들을 이용해서 회사를 경영해왔다. 확실히 Chep은 대기업이고 그럴만한 힘을 지녔다. 반대로, 파렛트 산업은 상업의 중심지에서 경쟁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수천 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Chep에 관해 파렛트 관련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 오만한 태도이다. 사업 운영을 하면서 내린 결정이 산업에, 또는 공급자에게까지 어려움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Chep 공급업자들과의 수많은 대화 결과, 그들은 그 사업은 좋아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 중요한 고객을 고려하는 어떠한 것에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

Pallet Enterprise 웹사이트의 토론장인, 파렛트 보드(‘Pallet Board’)에 가본 사람이라면 Chep이 파렛트 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음을 재빨리 알아챘을 것이다. 많은 재활용 업계 사람들은 Chep이 약속을 이행하지 있지 않고 최근엔 그 질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 Chep은 풀(pool) 운영, 특히 수리 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년간 사람들은 Chep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대륙에서 파렛트 생산과 수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업을 도맡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다. Chep이 초(初)일류 수리 점포(super-repair depots)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아주 최근까지도 모든 파렛트 회사들은 Chep에 대한 불평을 했다. 샌 안토니오에서의 에드

거 로자노(Edgar Lozano) 사건 이후, Chep의 강력한 전술은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파렛트 산업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자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에드거는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투옥되었고, Chep의 조치와 부당한 선전으로 그의 사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에드거는 Chep에 대한 소송을 건 상태이고 재판은 금년 봄에 열릴 예정이다.

서북 지역에서의 주도적 파렛트 기업인 NEPA는 최근 Chep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Chep이 NEPA에게 합법적 의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Chep은 자사의 파렛트를 사업 방식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이 제공하는 몇몇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이리저리 피해 왔다, 물론 구속력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소송은 주요 파렛트 회사들의 좀더 적극적 대처 자세를 의미하고 있다.

현재 재활용 사업에서 뛰어난 선두주자인 Buckeye Recycler는 오하이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번 소송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눈에 띄는 일이다. 우선, Buckeye Recycler는 숙련된 변호사 겸 존경받는 사업가인 샘 맥케도우(Sam McAdow)가 소유, 운영하고 있다. 샘은 또한 1970년대에 오하이오 공화당원인 주지사 로즈(Rhodes)와 밑에서 한 때 일을 하기도 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Buckeye Recycler 회사 자체와 그 리더쉽은 굉장히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번 소송 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회사가 최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오랜 기간동안 준비된 것이다. 그렇기에, 속에는 다른 속셈을 품고 있는 어떤 회사의 자동적 반응이 아닌 것이다.

Buckeye Recycler 소송이 산업 전반 수준의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더 포괄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Buckeye Recycler 법적 소송 개관

Buckeye Recycler가 건 소송 조항은 원고측의 다섯 가지 조항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사실들로 시작된다. 예를 들면, ‘피고 Chep USA는 동일한 파렛트를 회수하지 않고 비슷한 마크가 있는 것이면 받아들였다. 외견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Chep 파렛트 중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특정한 Chep 파렛트를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파렛트가 풀 안에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조항 마지막 부분에는 Buckeye Recycler에서는 보통 사업 일반에서 Chep 파렛트라면 다 받아들였으며, Chep은 시스템 외부로 빠져나간 파렛트, 특히 잃어버린 후에 변상 받는 파렛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절대 권리가 없다고 피력한다. 또한 그 행동을 보면, Chep USA는 이렇게 우연히 얻게된 파렛트를 버려 두고 있으며, 이 파렛트를 점령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Buckeye Recycler가 소송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조항 중 네 가지는 이 글에 이어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바란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파렛트 사업자들은 수년간 Chep에게 받은 불공정한 대우를 하소연해왔다. 그러나 파렛트 사업자 중 Chep에 대항하여 이렇게 중대한 법적 행동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사에서 계속적으로 이번 소송의 진행 사항을 독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재활용 사업 회사들은 자세한 사항을 밝히는데 동참하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보자. 이제 막 대결은 시작된 것이다!

조항 1 : 사기성의 거래 조항과 확인 판결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장되었다. Chep은 동일한 특정 파렛트가 반납되지 않아도 묵인했다. 다만 계약 내용을 보면, Chep의 파렛트가 반납되기만 하면 된다고 써어 있다.....반납자는 원래 받았던 그 파렛트를 돌려주거나, 다른 Chep 파렛트, 혹은 벌금을 내면 되었다.’ 오하이오 주에서 이런 방식으로 Chep은 파렛트를 순환시키면서 파렛트를 대여하거나 위탁하는 것보다는 상품의 판매를 위주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Buckeye Recycler에게 배달된 파렛트들은 일반 판매 상품이나 교환 물로 이용되었다.

‘Buckeye Recycler에 제공되는 파렛트에 대한 Chep이 주장하는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Chep은 Buckeye Recycler에 파렛트를 운반해주는 제공자나 어느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이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Buckeye Recycler에 양도된 파렛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Chep은 규칙적으로 Buckeye와 다른 사업자들에게 서신을 보내, Buckeye가 받은 파란색과 Chep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모든 파렛트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서신은 Chep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파렛트를 구매하거나 수용, 수집, 수리, 판매 등을 할 수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서신은 거짓된 주장과 사기성 거래 조항 위반에 대한 법적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조항 2 : 포기 그리고/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실

조항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를 위해서, 잃어버린 파렛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기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단지 회계 보고와 청산된 손해 배상이 해결되어야 한다. 동의 하에서, Chep은 파렛트에 대한 통제를 중지하는데 동의하거나, 파렛트 통제권에 대해 Buckeye Recyclers나 다른 파렛트 재활용업자들에게 허가해주어야 한다.

체인점에 대한 Chep의 소극적 태도와 무능력으로 파렛트가 빠져나갔고 파렛트 재활용 회사들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유입되었다.... 그러한 방식과 안이함이 Chep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대신, 만약 Chep이 파렛트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 파렛트를 위치 추적이나 파렛트 소유자

를 파악하지 못해서 입을 손해와 잃어버린 만큼을 보충하기 위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조항 3 : 관습법상의 유치권(留置權)

조항3에서는 다음 내용이 주장되었다. ‘Buckeye Recyclers는 체인점에서 파렛트 운반물을 받으면 가장 먼저 Chep 파렛트와 타사 파렛트를 헛갈리지 않도록 구분해 놓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Chep이 그 파렛트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여 이익을 보게 할 정도로, Buckeye Recyclers는 Chep과 체인점에 대해 배려한다. 또 이로써 체인점들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Chep은 파렛트를 손에 넣을 기회를 제공받는 셈이다....’

‘Buckeye recyclers는 자사의 서비스로 Chep과 체인점의 노동비용을 덜어주었다..... Chep는 효율적으로 파렛트를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명백하게 또는 암시적으로 Buckeye Recyclers의 서비스를 받아들였다.....’

그것만으로도 오하이오주 관습법에 의하면 Buckeye Recyclers는 수용하고 분류한 파렛트에 대하여 유치권(留置權)이 있다.....’

조항 4 : 부당한 이득

‘Chep은 Buckeye를 비롯한 다른 사업자들이 파렛트를 분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명백하게든 암시적으로든 효율적인 파렛트 관리에 실패하여 Buckeye Recyclers의 서비스를 승인하였으며,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Chep은 부당하게 Buckeye Recyclers의 노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했다. 따라서 Buckeye Recyclers는 Chep의 부당한 이득에 관한 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요청사항

Buckeye Recyclers는 다음 사항에 대한 재판을 요청한다.

- (A) 재판에서 결정된 만큼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할 것, 피고가 원고의 사업 기밀을 절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피고의 파렛트 소유권이나 그에 대한 거짓 주장을 금할 것.
- (B) Chep이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Buckeye Recyclers가 수용한 파렛트에 대해 둘 중 어느 회사가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판명.
- (C) 이득이나 경비, 재판비용, 등 형평(衡平)법 상으로나 법적으로 원고가 부여받은 모든 사항에 대한 비용 지불.